|  |  |  |
| --- | --- | --- |
| **교통운수부**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제도 실행방법 시범에 관한 통지**  교수발[2013]601호  각 유관단위:  무선박운송관리 제도를 진일보 완비하여, 무선박운영자의 자금압력을 완화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국은 2013년 10월 1일부터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증서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무선박운송인이 선택 적용하도록 한다. 현재 유관 실행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기본원칙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방식과 무선박운송업무 보증금 방식, 보증금책임담보방식은 모두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신청인(이하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재무책임증명형식으로, 3자병행 진행도 가능하며, 신청인이 스스로 선택 적용하도록 한다. 무선박운송인이 선택한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금방식은 현행 보증금 또는 보증금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2. 보증기구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를 취급하는 보증기구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되어야 함.  (2)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의 인가를 거치고 관련 보증업무에 종사해야 함.  3. 담보형식, 보증기간 및 범위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을 신청한 신청인 및 그 지사기구에 원칙상 동일한 재무책임증명형식을 적용한다. 즉 보증금, 보증금 담보증서 또는 보험형식을 적용한다.  신청인 및 보증기구가 보증기간을 자체적으로 약정하며, 그 기간이 최소 1년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증서는 무선박운송인이 운송업자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의무를 부당 이행할 경우 초래되는 채무의 상환에만 사용하며, 벌금 지불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시행절차  (1)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 신규 신청  2013년 10월 1일 이후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자격을 신청한 신청자가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증을 선택하여 제공한 경우, 《국제해운조례》및《국제해운조례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규정의 절차에 근거하여 보증기구의 종사증명서류, 보증기구 서명발급한 담보증 및《실시세칙》제 11조 (제5관 제외), 제 14조 (제 5관제외) 규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담보취소, 자격종지  가. 운영자격을 기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의 담보취소, 자격종지 절차:  운영자격을 기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이 담보를 취소하고, 자격을 종지할 경우, 교통운수부에 서면신청하고 교통운수부는 그 신청사항을 교통운수부 웹사이트(www.mot.gov.cn）에 30일 동안 공시한다. 신청 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신청서(법인대표서명 및 공장(公章)날인)  ② ‘무선박운송업무’ 말소 내용의 영업집조 복사본  ③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등기증》원본(정∙부본)  ④ 세무부문이 발행한 기 폐기된 무선박운송업무 전용 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운수전용 세금계산서》)증명 (미 수취한 경우, 세무부문이 발급한 관련 증명 또는《세금계산서 용지매입부》기록페이지의 복사본  공시기간 내, 유관 당사자가 무선박운송인이 운송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이행한 의무가 부당하다고 여기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상술한 기한 내에 사법기관이 기발효된 관련 판결 또는 사법기관이 집행을 결정한 중재기구 관련 판결을 취득하고, 보증기구는 담보계약규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관련 수속은 사법기관이 직접 보증기구를 통해 처리하고, 처리결과는 즉시 서면으로 교통운수부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기구는 관련 판결 및 판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  공시기간이 만료되도록 상기조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교통운수부는 《무선박운송인 운영자격등기증》을 몰수하고, 무선박운송인업무 운영자격을 말소처리하고 교통운수부 웹사이트에 결과를 공시한다.  나. 무선박운송인 운영자격 신청 종지 수속  신청인이 사정으로 운영자격신청을 종지할 경우, 교통운수부에 법인대표서명 및 공장이 날인된 서면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교통운수부는 심사절차 완료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인은 자체적으로 보증기구와 상의하여 관련수속을 진행한다.  (3) 기존 무선박운송인이 담보방식으로 무선박운송업무에 계속 종사할 경우  2013년 10월 1일 전, 운영자격을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이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제공 방식을 선택하여 무선박운송업무에 계속 종사할 경우, 기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험료의 반환신청을 할 수 있으나, 담보수속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 보증금, 보험료 반환을 신청하고, 제공한 담보방식으로 계속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을 보유할 경우,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보증기구의 종업증명문서  ② 보증기구가 서명발급한 담보증  ③ 보증금, 보험료 환급 서면신청: 신청 시 회사의 환불계좌 기재, 회사법정대표인의 서명 및 공장날인  ④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 등기증》원본(정∙부본)  교통운수부는 상술한 자료를 수령 후, 그 무선박운영자의 보증금, 보험료 환급 신청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공기기간은 30일이다.  공시기간 내에《실시세칙》제 20조 제 2관에서 규정한 사항이 보험금 환급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교통운수부는 무선박운송인 보증금 계좌 소재 은행에서 보증금 환급 수속을 밟도록 통지하고, 무선박운송인은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자격등기증》(‘담보’라는 단어 표기)을 새로 발행 받아야 한다. 보험해약에 포함될 경우, 교통운수부는 무선박운송인에게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자격 등기증》(‘담보’라는 단어 표기)을 재발행 해주고, 교통운수부 웹사이트에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보험기구는 제때에 보험해약수속을 마쳐야 한다.  (4) 무선박운송인 명의변경 수속  보증금 담보방식으로 신청하여 경영자격을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한 경우, 교통운수부에 신청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명의변경 신청표  ②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 등기증》원본(정∙부본)  ③ 구판 및 신판의 선하증권 원본  ④ 경내 무선박운송인은 《명칭변경심사비준통지서》, 원명칭 및 신규명칭의 영업집조 복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경외 무선박운송인은 기업등기국 유관부문에서 발급한 명칭 변경증명문서(현지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함)를 제출해야 함.  ⑤ 보증기구에서 명의변경 서명비준 후, 발급한 신규 담보증서  교통운수부는 무선박운송인에게 신규명칭의《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등기증》을 심사 발급한다.  (5) 무선박운송인 연장수속  보증금 담보방식으로 신청하여 경영자격을 취득한 무선박운송인이 연장신청을 한경우, 운영자격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교통운수부에 신청하고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① 연장신청서  ② 운영자격 유효기간 내 무선박운송업무 진행상황 설명서  ③ 보증기구 종업 증명문서  ④ 보증기구가 서명 발급한 유효보증금 담보증  ⑤ 경내 무선박운송인이 ‘무선박운송업무’의 내용이 추가된 영업집조 복사본, 경외 무선박운송인이 회사에 제공한 상업등기증명 복사본  ⑥ 기 서명 발급한 선하증권 (원본) 복사본 10부  무선박운송인이 그 경영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 즉시 연장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교통운수부는 명의개서 등의 수속을 진행하지 않으며, 기간이 만료 되면, 그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은 종지된다.  5.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보증의 사용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보증금 담보증서는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격신청자가 선택한 한 종류의 재무책임증명형식으로 공급되며,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가 운송업자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의무를 부당 이행할 경우, 사법기관의 발효된 판결 또는 사법기관이 집행을 결정한 중재기구 판결에 근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상술한 판결은 배상이행에 사용하고, 기타 책임의 보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재산보전 또는 발효판결 및 중재판결 집행에 관하여 사법기관은 직접 보증기구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는 즉시 서면으로 교통운수부에 통지해야 한다. 보증기구는 집행 관련 판결 및 판정에 협조해야 한다.  6. 보증기구의 책임  본 통지 제 4조 제 2관 규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증기구는 독단적으로 무선박운송업무 운영자 담보취소절차를 처리할 수 없다. 보증기구가 독단적으로 담보취소 절차를 처리한 후 발생한 책임은 관련 보증기구에서 져야 한다.  7. 주관부문 및 연락처  주관부문: 교통운수부 수운국(水运局)  전화: 010-65292650 65292655  팩스: 010-65292648  교통운수부（공인）  2013년 9월 30일 |  | **交通运输部关于试行无船承运业务经营者**  **保证金保函制度操作办法的通知**  交水发[2013]601号  各有关单位：  为进一步完善无船承运管理制度，缓解无船承运人资金压力，保障有关各方合法权益，我部决定自2013年10月1日起，试行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保函制度，供无船承运人选择。现将有关操作办法通知如下：  一、基本原则  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保函方式与无船承运业务保证金方式、保证金责任保险方式，均为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申请人（以下简称申请人）可采纳的财务责任证明形式，三者并行存在，供申请人自行选择。无船承运人选择缴纳保证金或保险方式的，依照现行保证金或保险制度执行。  二、担保机构  承办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保函的担保机构须符合以下条件：  （一）注册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  （二）经中国银行业监督管理委员会认可可从事相关担保业务。  三、保函形式、担保期间和范围  为规范管理，申请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的申请人及其分支机构原则上应采用同一财务责任证明形式，即均采取保证金或保证金保函或保险形式。  担保期间由申请人和担保机构自行约定，但最低不得少于1年。  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保函仅用于无船承运人清偿因其不履行承运人义务或履行义务不当所产生的债务，不能用于支付罚款。遇有罚款情况，无船承运人应另行支付。  四、操作程序  （一）新申请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  2013年10月1日以后申请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的申请人，如选择提供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保函的，应依照《国际海运条例》和《国际海运条例实施细则》（以下简称《实施细则》）规定的程序，提交担保机构的从业证明文件、担保机构签发的保函，以及《实施细则》第十一条（第五款除外）、第十四条（第五款除外）规定材料。  （二）无船承运业务经营者取消保函、终止资格：  1. 已取得经营资格的无船承运人取消保函、终止资格程序：  已取得经营资格的无船承运人申请取消保函、终止资格的，应向交通运输部提出书面申请，由交通运输部将该申请事项在交通运输部网站（www.mot.gov.cn）公示30天。申请时应提交以下材料：  （1）申请书（由法人代表签字并加盖公章）；  （2）已注销“无船承运业务”内容的营业执照复印件；  （3）《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原件（正、副本）；  （4）税务部门开具的已缴销无船承运业务专用发票（《国际海运业运输专用发票》）证明（如未领取，出具税务部门相关证明或《发票领购簿》发票购领记录页的复印件）。  公示期内，有关当事人认为该无船承运人不履行承运人义务或履行义务不当，应当承担赔偿责任的，应当在上述期限内取得司法机关已生效的相关判决或司法机关裁定执行的仲裁机构相关裁决，由担保机构依照担保合同规定进行赔付。相关手续由司法机关直接通过担保机构办理，并将办理结果及时书面通知交通运输部。担保机构应配合执行有关判决和裁定。  公示期届满未有前款规定情形的，交通运输部收缴《无船承运人经营资格登记证》，注销无船承运人业务经营资格，并在交通运输部网站公示结果。  2. 终止无船承运人经营资格申请的手续：  申请人因故终止经营资格申请的，应向交通运输部提交书面申请，由法人代表签字并加盖公章。交通运输部完成审核程序后通知申请人。申请人自行商担保机构办理相关手续。  （三）现有无船承运人以保函方式继续从事无船承运业务：  2013年10月1日前已取得经营资格的无船承运人，如选择以提供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保函方式继续从事无船承运业务的，可申请退回已缴保证金或保费，但应先行办理保函手续。申请保证金、保费退款，并以提供保函方式继续保有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的，应提交以下材料：  1.担保机构的从业证明文件；  2.担保机构签发的保函；  3.保证金、保费退款书面申请：申请应注明本公司退款账号，由公司法人代表签字并加盖公章；  4.《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原件（正、副本）。  交通运输部在收到上述材料后，对该无船承运人保证金、保费退回申请事项进行公示，公示期为30天。  公示期内未出现《实施细则》第二十条第二款规定事项的，涉及保证金退款的，交通运输部通知无船承运人保证金专户所在银行办理保证金退还手续，并为无船承运人重新办理《无船承运业务经营者资格登记证》（注明“保函”字样）；涉及退保的，交通运输部为无船承运人重新办理《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注明“保函”字样），并在交通运输部网站公布结果。保险机构应及时完成退保手续。  （四）无船承运人更名手续：  以保证金保函方式申请取得经营资格的无船承运人申请更名，应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并报送以下材料：  1.无船承运业务经营者名称变更申请表：  2.《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原件（正、副本）；  3.旧版及新版提单样本；  4.境内无船承运人须提交《名称变更核准通知书》、原名称和新名称的营业执照复印件，境外无船承运人须提交企业注册国有关部门出具的名称变更证明文件（须经当地公证机构公证）；  5.经担保机构签批更名后签发的新保函。  交通运输部将向无船承运人核发新名称的《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登记证》。  （五）无船承运人延期手续：  以保证金保函方式申请取得经营资格的无船承运人申请延期，应在经营资格有效期届满前提前30天向交通运输部提出申请，并报送以下材料：  1.延期申请书；  2.经营资格有效期内无船承运业务开展情况说明；  3.担保机构从业证明文件；  4.担保机构签发的有效保证金保函；  5.境内无船承运人提交已增加“无船承运业务”内容的营业执照复印件；境外无船承运人提供公司商业登记证明复印件；  6.已签发提单（正本）复印件10份。  如无船承运人在其经营资格有效期满前未及时办理延期手续，交通运输部将不为其办理更名等手续，届满后将终止其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    五、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保函的使用  无船承运业务经营者保证金保函，是供无船承运业务经营资格申请人选择的一种财务责任证明形式，当因无船承运业务经营者不履行承运人义务或者履行义务不当，根据司法机关已生效的判决或司法机关裁定执行的仲裁机构裁决应当履行赔偿责任的，用以履行赔偿，不得用于其他责任的偿付。  涉及上述财产保全，或生效判决和仲裁裁决执行的，由司法机关直接通过担保机构办理，并将办理结果及时书面通知交通运输部。担保机构应配合执行相关判决和裁定。  六、担保机构的责任  非经本通知第四条第二款规定程序，担保机构不得擅自为无船承运业务经营者办理撤销保函手续。因担保机构擅自办理撤销保函手续而产生的责任，由相关担保机构承担。  七、主管部门和联系方式  主管部门：交通运输部水运局  电话：010-65292650 65292655  传真：010-65292648  交通运输部（公章）  2013年9月30日 |